



NATRUE Label (자연 표기): 자연 및 유기농 화장품 요구사항

Version 3.8 – 01.06.2019

3.7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단락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다.

1. 서문

본 문서는 Nature의 화장품 인증 기준에 대해 기술한다. Nature Label에 관련한 배경 정보 – 기준, 승인된 물질, 인증된 제품 및 원료, FAQ – 는 인터넷 페이지, www.natrue.org 에서 고객 및 제조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1 배경

최근 제품 개발 활동을 살펴보면, 음식 분야뿐 아니라 여러 산업 영역에서 소비자를 위한 “자연주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화장품 구매 시에도 “자연주의적”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식과 화장품의 “자연주의” 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음식의 “자연주의”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재배 및 제품화 과정이 자연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점은 “천연” 및 “유기농” 이라는 무수한 표기 방식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천연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천연원료 대부분 원료 공정을 통해 복잡하게 가공 형성되므로, 음식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라벨이 우후 죽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천연 화장품 생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원재료를 선택하는 것 외에 가장 큰 난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일 뿐 아니라 감각적인 고품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순수 천연 성분만으로는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연 화장품과 관련하여, 어떤 천연 성분이 변경 없이 사용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명확하게 정의된 구조 내에서 물리화학적 변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천연 재료에 가까운 물질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이에 대한 절충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충이 소비자를 위해서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고려되었다고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의 정의는 일견 임의적 예외가 다수 발생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타협은 명확히 정의된 틀 안에서 절대적 필요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Nature Label (천연 표기)에 대한 제안 기준은 일관성 및 완전한 투명성에 관해 유럽에서 규정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이상이어야 한다. 천연 혹은 천연 동일, 그리고 파생 천연 원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2 규제 (EU 및 국제 규격)

1.2.1 화장품: Regulation (EC) No 1223/2009

천연 화장품 제품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들은 [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기본 요구 조건, 특히 구성, 안전, 효과 및 표기 (라벨링) 요구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동물 실험은 근본적으로 Nature의 근본 가치와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Nature의 기준이 Regulation (EC) No 1223/2009규정의 규제에 따라, 완제품인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 규정 범위를 EU 외부 제3 국가에 확대하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 이다.

1.2.2 유기농 제품 생산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표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천연 물질 (2.1항) 과 파생천연 물질 (2.3항)은 [IFOAM Family of Standards](#)에 따라 승인된 유기농 기준이나 규정, 혹은 해당 기준에 의해 정식 인정된 인증 기구 혹은 승인 기관을 통해 인증되고 관리된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거나 야생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GMO에 관해서는, 사용되는 효소 및 미생물뿐 아니라 완제품 및 출발 물질은, EC eco-regulation ([Regulation \(EC\) No 834/2007](#))의 규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물질 (비 유기농 인증 원료 및 비 식품 혹은 사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1.2.3 유전자 변형 물질 (GMOs)의 사용 금지

GMO와 관련하여 완제품 및 원료, 사용 효소 및 미생물은 EU 환경 규제 (Regulation (EC) No 834/2007)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물질 (예 : 비 유기농 인증 성분, 비 식품 또는 비 함유 물질)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비 GMO 규정 준수에 대한 표준화 된 양식의 예를 찾을 것.

효소 원산지 배제: 정당한 경우, 대체 물질의 현재의 기술적 이용 불능 및 / 또는 지속 가능성 개선을 위해, 재조합 미생물 (재조합 효소)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지정된 격리 수준 및 보호 조치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 후 처리를 포함하여, 규제된 사용 조건 하에서 재조합 숙주가 재배 되어야 하는 물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될 수 있다. (지침 2009 / 41 / EC 참조).

1.2.4 방향 천연 원료 : ISO 기준 9235

천연 화장품에서 천연향 (예를 들어 에센셜 오일)은 [ISO standard 9235](#)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에센셜 오일에서 분리한 물질, 그리고 이로부터 재구성된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다. 합성 천연 동일 향은 천연 화장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천연 향 재료는 Nature 표기 기준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2.1항) 천연 향 지침 및 ISO 9235 인증서의 예는 [여기](#)를 참조할 것.

1.2.5 세제: Regulation (EC) No 648/2004

사용되는 세제 계면활성물질은 세제류에 대한 EC 규제 ([Regulation \(EC\) No 648/2004](#))에 근거하



여 자연분해 가능해야 한다.

일련의 본 요구 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유럽 연합법과 관련되어 있다. 비유럽 연합국가나 지역의 경우 해당 근거는 제품이 판매되는 각 국가별 국내 해당 규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1.3 NATRUE 원칙

원료 문서화 파일 (RMDF)은 원료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완성을 위해 [여기](#)에서 RMDF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것. 향 원료에 대한 RMDF를 찾을 것.

1.3.1 지속성

생물적 다양성 존중 측면(제조업자에 의한 지속성 보고 혹은 환경 영향 평가 제출)에서 지속성 개발은 전체적인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Raw Material Documentation File \(RMDF\)](#)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출발물질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CITES, Appendix I) 워싱턴 협약의 규제 하에 있는 동물 및 식물 중에서 유래된 경우, 천연 물질(2.1항)에 대해서 천연 보존 당국의 승인/인증이 필요하다.

1.3.2 제조자 요구사항

천연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천연 화장품에 사용이 승인된 파생 천연 물질 및 천연 동일 원료 리스트 공개;
- 천연물질, 파생 천연 물질 및 천연 동일 원료 뿐 아니라 천연 화장품의 허용된 제조과정을 기술;
- 제품 중 천연 물질 및 유기농 등급 물질의 최소치, 그리고 “천연 화장품”, “유기농 성분을 포함한 천연화장품”, “유기농 등급 화장품”의 3가지 영역에서 파생 천연 원료의 최대치
- 포장 및 특정 전달물질(carrier material)에 대한 기준

1.3.3 NATRUE 표기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관련 Nature 기준에 근거한 제품 인증은 Nature 회원이나 기타 기관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Nature 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브랜드(또는 이미 확립 중인 자연/유기농 화장품 품목으로 분류하기 위해 명확하게 전개하고 있는 서브 브랜드)제품 내에서 최소 75%에 대해서(완제품) 자연 혹은 유기농 화장품임을 인증 받아야 한다. 최종 제품의 NATRUE라벨사용 동의서 제2장을 참조할 것.

만약 기업이 다른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의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NATRUE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75 % 계산의 출발점은 다른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도 고려하지만, NATRUE 라벨로 원활한 전환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의 첫 2 년 기간 만 인정한다. 첫 2년 후에는 75 %의 출발점이 NATRUE 라벨 인증 제품에 대해 보장되어야 한다. 중



복 라벨은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한 인정된다. 다른 인증의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 공인된 통제 기관에 의해 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화장품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적 상세 내용은 원재료의 NATRUE라벨 사용동의서를 참조할 것.

2. 허가된 성분과 공정

기본 베이스가 되어 화장품 생산의 가장 큰 성분이 되는 물을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변형을 가하지 않은 천연 물질 (예를 들어 천연오일, 하이드로 알콜성 식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품”으로 주장되는 제품 상에서 지배적이다. 화학적 처리가 안된 천연 원료의 경우 가급적 유기농 등급이어야 한다. 참고로 물질 분류 가이드를 참조하시오

2.1 천연 물질 (Natural Substance)

천연 화장품은 (2.2와 2.3 항을 대상) 천연 물질로만 생산된 것을 가리킨다.

천연 물질은 식물, 무기 미네랄계 (미네랄 오일과 같은 유기 미네랄이 아니어야 한다), 혹은 동물 유래 (척추 동물 사체 제외), 이러한 물질 혼합, 그리고 “반응 생성물”을 포함한다.

Annex 1a 에 기재된 추출 용매와 정제 물질, 그리고 Annex 1b에 기재된 pH 조정 물질을 통한 추출 방식을 포함한 물리적인 과정만 생산 및 추가적인 공정에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효소 및 미생물 반응은 독점적 자연적으로 발생한 미생물 또는 효소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 가능하며, 최종 생성물은 자연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다.

천연향에 (예: 에센셜 오일) 관한 규제 상세는 ISO standard 9235에 상응하는 1.2.3 항을 참조한다.

완제품뿐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 유래 원료는 전리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천연 물질의 표백에는 염소물질이 (sodium hypochlorite)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1.1 물 (Water)

천연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의 유래는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완제품에서 천연 물질 구성 비율을 산정할 때 (3항 비교), 물은 식물성 물질에서 추출한 경우에 한해서(직접 추출한 식물 즙) 천연 물질로 간주한다.

수분을 포함한 천연 물질은 다음과 같은 중량 비율이 고려된다..*

a) 식물 즙: 100 % 천연 물질

b) 식물 즙 농축액: 100% 농축된 경우에만 천연 물질에 해당하며 물로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



c) 수용성 추출액: 식물 부위만 해당함

d) 하이드로 알콜성 추출액: 식물 및 알코올성 부위 (천연 물질인 경우)

* 식물 추출물 및 증류수/플로랄 워터(floral water)에 대한 계산의 예시는 Annex 6에 기재되어 있다.

2.2 천연 동일성 물질 (Nature-identical Substance)

천연 동일성 물질은 합리적인 기술적 노력을 통해 천연으로부터 만들어 낼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천연 동일성 물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Annex 2: Nature-identical inorganic pigments and minerals

- Annex 4a: Nature-identical preservatives (Section 2.4)

리스트에 있는 천연 동일성 물질만이 천연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Annex 2 와 4a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다.

2.3 파생 천연 물질 (Derived Natural Substances)

파생 천연 물질은 해당 기능을 천연 물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고, 파생 천연 원료 용 천연 출발 물질은 가급적 유기농 등급이어야 한다.

파생 천연 물질은 생물공학적인 공정을 포함한 화학 반응을 통해 2.1 절 (지방, 오일, 왁스, 레시틴, 모노 올리고당 및 다당류, 단백질 및 지단백질)에서 정의된 천연 물질로부터 항상 얻고, 천연화장품 생산에만 사용된다.

파생 천연 물질은 생리적 메커니즘 (예: 지방 분해로 부분 글리세리드를 형성)을 모델로 하는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해야 하며 화학 전환 단계의 수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의 화학 반응을 허용한다:

- 아실화(Acylation):
- 아미드화(Amidation),
- 응결 (수분 제거),
- 수소이탈(Dehydrogenation),
- 이합체화(Dimerization).
-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
- 글리코시드화(Glycosidation),
- 수소첨가(Hydrogenation),
- 가수소분해(Hydrogenolysis),



- 가수분해(Hydrolysis) (감화(saponification) 포함),
- 중성화(Neutralisation),
- 산화(Oxidation)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수 이용),
- 인산화(Phosphorylation),
- 열분해(Pyrolysis)
- 황산염화(Sulphatation),
- 에스테르 교환(Transesterification)

NATRUE의 인증 기준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보조 재료와 촉매 (효소와 미생물 등을 포함)는 (a)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성의 향상의 일환으로 또는 (b) 대안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모든 경우:

-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는 비 효소적 / 비 미생물학적이다.
- 효소 / 미생물학적 반응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은 최종 생성물을 생산한다.
- 반응은 재조합 미생물로부터 분리된 효소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 물질은 자연적으로 파생 된 것으로 분류된다.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 (유전자 변형 미생물, GMMs)의 사용은 제 1.2.3 항에 따라 정당화된 재조합 효소의 생산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어떤 경우에도 보조 재료와 촉매는 사용 후 완전히 제거되거나, 최종 제품에서 적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제거되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 잔류가 인정됩니다.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도한 계면 활성제 등 파생 천연 원료의 환경 친화성은 자연의 순환에 어떠한 문제도 주지 않고 분해되는 것을 보장되도록 단독 평가되어야 하고, 생물학 분해성에 대한 특정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2.4 항; [\[EU 규정 \(EC\) No 648/2004\]](#))

파생 천연 물질은 (2.2항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나, 현재 기술로는 자연 자원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는 물질을 포함한다.

Annex 3에 포함된 승인된 파생 천연 물질에 대한 공개 리스트는 (INCI) 상기 언급된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해당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2.4 보존제 (Preservatives)

천연 화장품의 보존에 관련하여, Annex 4a에 기재된 천연 동일 보존제, Annex 4b에 기재되어 있는 파생 천연 보존제를 (Annex V of Regulation (EC) No 1223/2009 준수) 사용해야 한다.

Annex 4a와 4b의 승인 제품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Annex V에서 허용된 파생 천연 물질은 2.3항의 요구 사항에 상응해야 한다.

2.5 제조, 가공, 및 충전 공정

모든 제조, 가공 및 충전 공정 중에, 이러한 공정, 포장, 보관 용기 자재에서 유래된 부적절한 물질이 제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천연 물질과 유기농 등급 천연 물질의 필요 최소 함량과 파생 천연 물질의 최대 함량의 조건

각 인증 수준 및 카테고리 별 천연 물질 및 파생 천연 물질 별 상응 수준에 관해서는 표1을 참조한다.

3.1 천연 화장품

천연 물질의 최소 수준 및 파생 천연 원료의 최대 수준(전체적인 생성에 근거하여)은 표1의 제품군에 따라 나뉜다. (Annex 5는 본 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3.2 유기농 함유 천연 화장품

상기 3.1항에 기술된 기본적인 요구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 요구사항:

3.2.1 제품에 포함된 식물이나 동물 유래의 자연 물질 그리고 파생 천연 물질의 최소 70%는 (가능하다면, 3.2.2 항에 따라) IFOAM Family of Standards에 따라, 승인된 유기농 기준이나 규정, 혹은 해당 기준에 의해 정식 인정된 인증 기관 혹은 행정 기관을 통해 인증되고 관리된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거나 야생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3.2.2 제품에 포함된 파생 천연 물질이 관리된 유기농 출발물질로부터 제조된 경우, Annex 5에 정의된 유기농 양을 고려하여 최종 유기농 양에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유기농에 기반한 파생 천연 원료의 가용성 증대를 위해서 해당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3.3 유기농 화장품



상기 3.2항에 기술된 기본적인 요구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 요구사항:

3.3.1 제품에 포함된 식물이나 동물 유래의 천연 물질 그리고 파생 천연 물질 의 최소 95%는 (가능하다면, 3.3.2 섹션에 따라) IFOAM Family of Standards에 따라 승인된 유기농 기준이나 규정, 혹은 해당 기준에 의해 정식 인정된 인증 기관 혹은 행정 기관을 통해 인증되고 관리된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거나 야생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3.3.2 제품에 포함된 파생 천연 물질이 관리된 유기농 출발물질로부터 제조된 경우, Annex 5에 정의된 유기농 양을 고려하여 최종 유기농 양에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유기농에 기반한 자연 유래 원료의 가용성 증대를 위해서 해당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4. 전달 물질 별 요구사항 (예: 물수건이나 패드)

제제를 피부에 국소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달 물질의 경우, (예: 물수건이나 패드)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생산된 천연 그리고/또는 파생 천연 물질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5. 포장 및 포장 재료별 요구사항

1. 포장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2. 제품은 가능한 다목적 용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샘플 제품은 제외)
3.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가능하다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리, 알루미늄, 종이/판지, 그리고/혹은 재활용 가능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염산]; PP[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플라스틱류)와 같은 플라스틱; 가능하다면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할로겐 화합물 플라스틱은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폴리비닐 염화물, 염소 처리한 플라스틱류)
5. 가압 가스 포장은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혹은 아르곤(VOC-휘발성 유기농 성분 비 포함)으로 이루어져야 Nature 기준에 의하여 천연 혹은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표1에서와 같이 가스는 계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6. Annexes

다음 별첨 문서는 온라인 상의 엑셀 파일, "[Annexes 3.8](#)"를 참조한다.

Annex 1a: 천연 물질 생산을 위해 승인된 추출용매

Annex 1b: 천연 화장품 생산을 위해 승인된 pH조절 및 이온 교환 물질

Annex 2: 천연 화장품을 위해 승인된 천연 동일 무기안료 및 미네랄

Annex 3: 천연 화장품 생산을 위해 승인된 파생 천연 물질 -(INCI 명 공개 리스트)

Annex 4a: 천연 화장품 생산을 위해 승인된 천연 동일 보존제



Annex 4b: 천연 화장품 생산을 위해 승인된 파생 천연 보존제

Annex 5: (IFOAM Family of Standards이나 동 기준에 의해 승인된 유기농 기준이나 규제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인증기관 이나 행정 기관이 승인한 유기농 원료에서 제조된 천연 유래 물질의 유기농 성분 산출법

Annex 6: 식물 추출물, 증류수/플로탈 워터의 천연 (유기농) 성분 비율 계산 예시

:



표1: Nature 기준에 인증된 제품의 항목별 요구사항

천연 물질의 최소 구성과 (%) (녹색) 파생 천연 물질의 최대 구성은 (%) (오렌지색) 다음과 같다.
추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원제품 중 원료 비율(%)	오일/수분 미포함 세정 및 스킨케어 제품	퍼프, 오드퍼프, 오드 드윌렌, 오드 콜롱	스킨케어 에멀전 (W/O) 및 올레오겔	수분 포함 메이크업 제품	데오토란트 및 발한억제제	스킨케어 에멀전(OM) 및 겔	신크림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	계면 활성제를 포함한 세정 제품	구강 관리 제품	수분 미포함 메이크업 제품	비누	스킨
자연화장품 (Level 1)	80	60	30	10	10	10	10	3	3	2	1	1	0.1
	20	10	30	30	30	25	55	40	85	70	50	99	10
유기농성분 자연화장품 (Level 2)	90*	60*	30*	15*	15*	15*	15*	15*	15*	15*	15*	1*	15*
	10**	10**	20**	15**	15**	20**	30**	15**	25**	15**	15**	99**	5**
유기농화장품 (Level 3)	90*	60*	30*	20*	20*	20*	20*	20*	20*	20*	20*	1*	20*
	10**	10**	15**	15**	15**	15**	15**	15**	25**	15**	15**	99**	5**

-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천연 동일 물질 및 물의 배합량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은 없다.

* 3.2 및 3.3항에 기재된 관리된 유기농 재배된 물질의 함량

** 3.2 (유기농 함유 천연 화장품) 또는 3.3 (유기농 화장품)항의 유기농 출발 물질로 구성된 파생 천연 물질

*** 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제품에 추가로 물을 5%까지 포함된 경우

3.2항 (유기농 함유 천연 화장품)이나 3.3항의 (유기농 화장품) 비누에 대해서 천연 및 파생 천연 물질은 가산된다.